##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3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김승원·김진표·안민석

양정숙 · 오영환 · 이성만

임호선 · 전용기 · 전재수

조응천 · 한병도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됨.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전형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 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 형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학전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일반전형: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2.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3. 사회통합전형: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차등적인 선발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	
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	
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	
이 있는 사람 중에서 <u>일반전형</u>	<u>다음 각 호의</u>
(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구분에 따른 입학전형
<u>"입학전형"이라 한다)</u> 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	
다.	
<u>&lt;신 설&gt;</u>	1. 일반전형: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
	<u>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u>
	<u>형</u>
<u>&lt;신 설&gt;</u>	2.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u>&lt;신 설&gt;</u>	3. 사회통합전형: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

발하는 전형

- <u>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
- <u>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위계층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지원대상자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 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차등적인 선발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 ⑨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